

『구미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(2011.12.16)로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 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조례」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」로 명칭 개정
- 기구명칭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“보건진료소”를 추가(안 제1조 ~ 2조)
- 개정된 법령 제명 반영(안 제3조 ~ 5조)
-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(안 제9조)
 - 당일 납부에서 익일 납부(단,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 납부)로 개정

4. 참고사항

「보건복지부 훈령」, 「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(2011.12.16)로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「구미시

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조례」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 보건소및보건지소 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」로 명칭 개정
- 안 제1조 ~ 2조에 가구명칭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“보건진료소”를 추가
- 안 제3조 ~ 5조에 개정된 법령 제명 반영
- 안 제9조에 기존 진료비 및 수수료의 당일납부 규정을 익일 납부(단, 보건진료소의 경우 5일 이내 납부)로 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목과 조항 일부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고치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에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타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